

미래를 여는 희망과 감동의 의회

의 정 정 보

2014-2호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의정정보 2014-2호

1. 타 시 · 도 의회 주요 동향	3
2. 최근 타 시 · 도 제 · 개정 조례	15
3. 최근 개정 법령	31
4. 충청남도의회 60년사 (연재②)	41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041)635-5121

모두 보기



1. 타 시 · 도 의회 주요 동향

1. 서울특별시의회 (7)
2. 대구광역시의회 (10)
3.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12)



2. 최근 타 시 · 도 제 · 개정 조례

1.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19)
2.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3)
3. 전라북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25)
4. 전라북도 로컬푸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8)



3. 최근 개정 법령

- 주택법 (33)



4. 충청남도의회 60년사

- 충청남도의회 출범과 발전 (46)



타 시 · 도 의회 주요 동향



타 시 · 도 의회 주요 동향

1. 서울특별시의의회(7)

- 서울시의회, 시정평가 정책연구발표회 열어
- 서울시의회, 2013년 민원 통계 분석 결과 발표

2. 대구광역시의의회(10)

- 대구 ‘공동주택 감사’ 확대된다

3.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12)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 피해보상 정부가 나서야



1.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시정평가 정책연구발표회 열어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는 복지와 도시안전을 주제로 8대의회 활동을 정리하기 위한 정책연구발표회를 가졌다.

2월 6일 열린 이번 서울시의회 정책연구발표회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복지정책과 도시안전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서울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형식으로 진행됐다.

서울시의회 브레인이자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박양숙)는 시의원과 외부전문가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발표회는 8대의회 마지막 해에 열린 첫 번째 발표회인 만큼 시정 핵심과제에 대한 위원들의 연구결과와 서울시정에 대한 평가와 토론이 이어졌다.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복지문제와 관련해서는 박경수 위원(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과 이찬진 위원(제일합동별률사무소 변호사)이 공동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성동구 사례 분석을 통한 복지서비스 정보제공과 편의성 강화방안,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방안 등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박양숙 정책연구위원장은 “이번 발표회는 시민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복지정책과 도시안전정책을 점검해 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면서 “8대의회 임기가 종료되는 올해 6월말까지 서울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정책연구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 사 점

우리도의 의정자문위원회와 서울시의 정책연구위원회의 기능을 면밀 분석하여 벤치마킹을 통해 신설 또는 의정자문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하는 방안 검토 필요

서울시의회, 2013년 민원 통계 분석 결과 발표

서울시의회 민원통계 분석 결과 시민에게 밀접한 정책개발에 활용

서울시의회(성백진 의장직무대리)는 2013년도에 접수·처리된 민원 462건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그 결과를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 마련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원 유형별로는 시정요구가 70%에 달했으며, 뒤이어 제안건의, 문의 확인, 이의제기 순으로 접수됐다. 이중 제안건의가 16.2%를 차지해 서울시청 및 자치구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여 입법기관인 시의회의 특징을 나타냈다.

민원분야(상임위원회)별로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30.0%, 교육위원회 19.1%, 교통위원회 11.9%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가 전체민원 중 61%를 차지했으며, 민원 비중은 재건축·재개발 찬성 또는 반대, 교육예산 확보, 교통불편 해소의 순으로 내용이 많았다.

민원이 집중되는 시기로는 1월, 11월, 12월 접수분이 전체민원의 43.5%를 차지했는데, 이는 예산이 확정되는 시기에 이해관계인이 집중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에 사립초등학교 돌봄교실, 영어전문강사 고용안정 등의 민원이 집중됐다.

또한 민원 접수방법으로는 인터넷을 이용해 민원을 입력하는 전자민원이 전체 민원 중 77%로 가장 많아 인터넷 활용 일상화로 간편한 전자방식이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민원해결 방법으로 시의회 및 시의원 차원의 직접적인 해결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민원조사를 전담할 부서나 인력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접수민원의 약70%가 서울시, 교육청, 구청 등 집행부서에 이첩 처리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분석됐다.

성백진 서울시의회 의장직무대리는 "서울시의회 민원통계 분석을 계기로 시민소통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딛었다"며, "보다 시민에게 밀접한 정책개발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회신문고 운영을 더욱 개선·강화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시민의 가려운 곳을 직접 긁어주는 효자손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시 사 점

민원통계 분석 결과를 정책마련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주민 만족도 향상

2. 대구광역시의회

대구 ‘공동주택 감사’ 확대된다

김원구 시의회 행자위원장,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부실 지적 지난해 184건 적발 비리척결 정기감사 요구

아파트 비리 척결을 위한 감사가 대구 전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2월 12일 김원구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제221회 임시회 감사관실 업무보고 자리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부실 실태를 지적하며 정기적이고 엄격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아파트 등 대구지역 공동주택이 민간부문 비리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사회적 갈등의 큰 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그동안 별다른 규제나 감독을 받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올해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대폭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대구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개정된 주택법을 근거로 300세대 이상 16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184건을 적발했다. 세부조치 내용으로는 수사의뢰 4건, 과태료 부과 30건, 시정개선 150건 등이다.

경찰에 수사의뢰된 사람은 10여명에 이른다. 공금횡령·유용 4명, 공동주택 유지보수 부실시공 2명, 보육시설 운영자 부적정 선정 5명, 에너지절감 사업계약·시공 부적정 1명 등이다.



김 위원장은 “주택법 개정으로 이제는 입주민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주민 요청감사) 외에도 자치단체장이 주민요청 없이도 공동주택 관리상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감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의 300세대가 넘는 755개 단지 중 매년 1/3 정도는 감사를 실시해 적어도 3년에 한번은 지방정부의 엄격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300세대 미만의 단지도 무작위로 선정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감사 대상의 확대로 인한 대구시 감사관실 인력부족은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가 진행하고, 대구시가 지휘 감독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강병규 대구시 감사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지역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755개 단지(세대수 41만8천 666세대), 300세대 미만은 835개 단지다.

시 사 점

2013년 12월 24일 주택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상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감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가능한 범위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대한 감사 실시 검토 필요 (관련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함)

(※ 개정법률 시행일 2014. 6. 25.)

3.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 피해보상 정부가 나서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마련과 피해보상금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세종시에서 2014년도 1차 임시회 개최
- 최진호 의장, AI 피해 농가 경영안정대책 및 오리·닭 소비 확대 등 목청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진호 회장(전북도의회 의장)은 2월 13일 세종시 베어트리파크에서 제1차 임시회를 갖고 전북·전남·충북도의회의장이 공동으로 제출한 AI 방역대책 촉구 결의문을 채택, 정부부처에 전달키로 했다.

최진호 회장 등은 결의문을 통해 “AI는 2003년 12월 최초 발생 이후 2~3년 주기로 반복되면서 축산 농가 및 방역활동과 살처분에 동원되는 공무원의 고통이 매우 크다”면서 “정부는 AI를 국가의 재난으로 보고 지원과 함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회장은 특히 “살처분으로 인한 보상은 2011년 7월 이후 평가액의 80%만 지급, 피해농민의 손실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보상금 주체 또한 중앙정부 80%, 나머지 20%는 지자체가 부담하다 보니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그러면서 “AI의 악순환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각종 가축전염병 상시 총괄자문기구 설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확대 △철새 감시 체계 구축 등이 시급하다”면서 “아울러 AI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대책 조기 마련과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국비로 우선 지원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붙임]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지난 달 16일 전북 고창에서 시작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충남 부여와 천안, 전남 해남과 나주, 경기 화성, 충북 진천과 음성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병이 확인되는 등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22건의 의심신고가 접수되어 그중에서 17건의 AI 확진판정이 나와 154개 농장에서 살처분하였고, 최근에는 전남, 전북, 충남 당진과 서천, 경기 화성과 수원, 인천 용진의 철새 폐사체에서도 AI 확진판정이 나와 축산농가를 긴장시키고 있다.

발생 초기부터 지자체와 축산농가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방역에 집중한 결과 주춤하는 듯 했던 AI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이유도 모른 채 살처분되는 닭·오리와 이를 자식처럼 키운 축산인을 생각하면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2003년 이후 10여 년 동안 2~3년 주기로 AI가 발생하고 그 때마다 대량 살처분이 반복되고 있으나, 살처분 보상은 중앙정부가 80%를 지원하고 20%는 시·군이 부담하고 있으며, 여기에 차단방역 비용, 가금류 살처분 작업 비용 등을 포함하면 수십에서 수백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철새가 이번 AI의 원인이라 하더라도 그 전염은 결국 접촉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철저한 방역으로 더 이상 확산을 막아야 하며,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고강도 예찰과 방역 활동을 계속하여야 하는 한편, 정부는 이번 AI 발생을 국가의 재난으로 보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원인을 조속히 파악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집단 사육의 열악한 환경과 기후 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 등으로 AI 바이러스는 해마다 변종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제 가축전염병은 가축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계속되는 AI의 악순환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밀식사육 금지, 야생 철새의 대륙별 이동에 따른 감시 체계 구축, 살처분 보상금 전액 국비지원 등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각종 가축전염병을 상시적으로 총괄하고 자문할 수 있는 전문기구를 설립하라.

하나. 정부는 열악한 가축사육 환경 개선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대폭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AI 바이러스 유입의 원인이 되고 있는 철새에 대한 AI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정부는 AI 관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대책을 조기에 마련하고, 오리·닭 소비 확대를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AI 관련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국비로 우선 지원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라.

2014년 2월 13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최근 타 시 · 도 제 · 개정 조례



최근 타 시 · 도 제 · 개정 조례

1.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19
2.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3
3. 전라북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25
4. 전라북도 로컬푸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8



1.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제정) 2013-12-31 조례 제4267호

1. 제정이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지역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시장으로 하여금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해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제4조).
- 나.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창출위원회를 설치토록 함(제5조부터 제8조까지).
- 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및 교육기관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9조부터 제10조까지).
- 라. 대전광역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이 매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함(제11조).
- 마.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 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도록 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시 사 점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제정 검토 필요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요약

(제정) 2013-12-31 조례 제 4267호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산업동향 분석 및 청년 인력 수급 전망
2. 청년일자리 개발과 일자리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청년일자리 관련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청년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청년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및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



3. 청년일자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추진기획단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취업지원 등) ① 시장은 청년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취업지원과 취업알선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년취업 지원사업을 실시한 유관기관에서는 사업의 성과를 시장에게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기관 활용) ① 시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의 취업에 대한 정보를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시 공보에 게재하여 청년과 사업주 및 관련 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산하기관의 청년고용) 시장은 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이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청년일자리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 고용, 직업 및 근로환경 등에 관한 연구, 자료 수집 및 홍보
2. 청년을 위한 커뮤니티 환경 조성, 청년일자리 네트워크 구축·관리
3. 청년 맞춤형 아카데미 실시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4. 시의 정책과 연계될 수 있는 청년일자리 정책 개발
5.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② 제1항의 센터는 대전광역시 일자리지원센터 내에 둘 수 있다.

제13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2.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3-12-31 조례 제4265호

1. 제정이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한 사회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가족친화 사회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시장·시민·사업주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부터 제5조까지).
- 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6조).
-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제7조).
- 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제8조).
- 마.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한 사람·기관 및 단체에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제9조).

시 사 점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제정 검토 필요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요약

(제정) 2013-12-31 조례 제4265호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친화 사회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양성평등하고 건강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가 시행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가 도입·확대되도록 직장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장과 사업주 등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2. 민간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친화적 문화 확산사업
2.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사업
3. 가족정책 인프라 강화사업
4.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제8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표창)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한 사람
2.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



3. 전라북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2014-01-06 조례 제3827호

1. 제정이유

- 가. 기부식품 사업이 규정의 미비로 지원 사업의 난립, 배분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기부식품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 나.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이용자 무상제공 등 기부식품의 제공원칙을 규정함(제3조)
- 나. 도지사는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함(제5조)
- 다.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함(제6조)
- 라. 도지사는 기부식품제공사업의 경비를 사업 실적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음과 연 1회 이상 이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규정함(제7조 ~ 제8조)
- 마. 도지사는 기부식품제공사업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 및 사업자의 사업수행결과 평가와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 제10조)

시 사 점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이용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조례 제정 검토 필요

전라북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요약

(제정) 2014-01-06 조례 제3827호

제3조(기부식품의 제공원칙) 기부식품제공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기부하는 식품은 무상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용을 받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2.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3. 기부식품을 종교적·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5조(식품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도지사는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제공사업 육성·지원계획
2. 식품기부와 관련한 체계 구축·운영
3. 기부식품제공사업 종사자 교육
4. 기부식품의 지역내 적재적소 제공
5. 그 밖에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식품기부 협조요청) 사업자는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 경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2. 기부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차량, 그 밖에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의 취식으로 인한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료
4.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5. 그 밖에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제10조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④ 제7조 제2항에 의거 지원된 장비 보강사업비 지원 등 기부식품제공사업기관이 폐업 또는 노후장비 교체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사업자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① 도지사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대중매체 홍보, 전라북도 홈페이지 게재 및 시·군 홈페이지 게재 협조요청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평가 및 포상) ① 도지사는 사업자의 사업수행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포상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 및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제공 등 포상할 수 있다.

4. 전라북도 로컬푸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4-02-14 조례 제3838호

1. 제정이유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농·식품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로컬푸드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 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로컬푸드 육성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제6조)
- 다. 로컬푸드 육성·지원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 라. 로컬푸드 인증 직매장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시 사 점

안전한 지역농산물을 공급하여 주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농어촌주민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 검토 필요



전라북도 로컬푸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요약

(제정) 2014-02-14 조례 제3838호

제3조(책무) ① 도지사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로컬푸드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군수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로컬푸드에 관한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로컬푸드 육성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도의 발전계획 수립 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계획을 포함하여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로컬푸드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 생산·가공·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3. 생산자-소비자 간 도농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로컬푸드 육성·지원 등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

③ 시장·군수는 도의 육성계획에 따라 로컬푸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시·군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6조(로컬푸드 육성사업 지원) 도지사는 로컬푸드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소규모 농가 조직화를 위한 로컬푸드 작목반 육성
2. 로컬푸드 품목별 계획생산을 위한 조직화, 활성화 지원
3.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활성화를 위한 거점 가공시설 지원
4. 로컬푸드 직매장·직거래장터 및 공동작업장 등 시설·장비 지원
5. 로컬푸드 생산자 및 소비자 교육·홍보·컨설팅 지원
6.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비 지원 및 소비자 모니터링단 운영
7. 그 밖에 도지사가 로컬푸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정책협의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로컬푸드 육성·지원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전라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군 로컬푸드 지원사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활성화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로컬푸드 정책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참석자에 대하여는 「전라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로컬푸드 인증 직매장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로컬푸드의 안정적 공급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맞게 운영하는 직매장에 대해 인증 직매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한 직매장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지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로컬푸드 인증 직매장으로 지정을 받은 직매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자금 등을 지원할 때 로컬푸드 인증매장으로 지정된 사업자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인증 직매장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최근 개정 법령





주 택 법

[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2013.12.24.,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노후 공동주택에서의 생활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용하면서 구조안전진단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며,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동주택성능 등급제도,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혼합주택단지 관리사항 결정방법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사항 결정방법 규정

- 1)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를 혼합주택단지로 규정함(제2조제6호의2 신설).
- 2)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함(제43조제10항 신설).

나.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 범위 확대 및 수직증축 허용

- 1)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를 기존 세대수의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확대하고,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함(제2조제15호다목).
- 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 시 제출한 구조도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사항 등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제24조의3 신설).
- 3)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허가하도록 함(제42조제10항 신설).
- 4) 시장·군수·구청장은 증축형 리모델링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와 구조안전에 대한 상세 확인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제42조의3 신설).
- 5)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및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여부 등 건축물의 안전성에 대해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도록 함(제42조의4 신설).
- 6)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및 이주수요 집중 등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대도시의 시장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42조의6, 제42조의7 및 제42조의8 신설).
- 7) 시장·군수·구청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2조의10 신설).
- 8)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63조제1항제17호).



9)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규정 및 리모델링 구조기준 위반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둠(제94조제1항, 제98조제4호의2 및 제101조제2항제1호 신설).

다.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여도 행정처분 등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여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회생기회를 부여함(제13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라.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도록 함(제21조의2 신설).

마.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시행

- 1)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의6제1항 신설).
- 2)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도록 하며, 인증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제21조의6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 신설).
- 3) 장수명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장수명 주택 취득자에 대하여 행정·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건폐율·용적률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의6제4항 및 제7항 신설).

바.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

- 1) 주택관리업자 또는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전자입찰제를 의무화함(제43조제7항 및 제45조제5항 신설).
- 2) 시장·군수·구청장의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의무화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3년마다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제43조의2제1항, 제58조제3항 신설).
- 3)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선거 또는 공동주택의 중요의사 결정을 위한 전자투표제를 도입함(제43조의5 신설).
- 4)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함(제45조의3 신설).
- 5) 관리비 등에 대한 회계서류의 보관을 의무화함(제45조의4 신설).
- 6) 공동주택단지에서 이루어지는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의 계약서를 입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제45조의5 신설).
- 7) 공동주택단지의 공사나 용역의 적정성을 검토·자문해줄 수 있는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제45조의6 신설).
- 8) 공동주택관리분쟁의 상담·자문 등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52조의2 신설).
- 9)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비리 등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5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 10)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제공한 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등에 불응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제97조제13호의2 및 제101조제2항제7호 신설).

사.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규정

- 1)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제44조의2제1항 신설).



- 2)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게 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피해를 끼친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도록 함(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 3) 관리주체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 될 경우 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제44조의2제4항 신설).
- 4)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공동부령으로 정함(제44조의2제5항 신설).
- 5)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주거생활 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제44조의2제6항 및 제7항 신설).

시 사 점

개정법률 제59조제6항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는 규정에 따라 관련 조례 검토 필요

(※ 개정법률 시행일 2014. 6. 25.)

《 주택법 》

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별 대표자, 관리주체,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24]

[시행일 : 2014.6.25] 제59조



[연재 ②]

충청남도의회 60년사





제2편

충청남도의회 의 출범과 발전



충청남도의회의 출범과 발전

목 차

1	초대 충청남도의회	46
	제1절 의회의 구성	46
	1. 시대적 배경과 의미	46
	2. 선거현황	47
	제2절 의회의 운영	50
2	제2대 충청남도의회	51
	제1절 의회의 구성	51
	1. 시대적 배경과 의미	51
	2. 선거현황	51
	제2절 의회의 운영	54
3	제3대 충청남도의회	57
	제1절 의회의 구성	57
	1. 시대적 배경과 의미	57
	2. 선거현황	58
	제2절 의회의 운영	60

제2편 충청남도의회 의 출범과 발전

제1장 초대 충청남도의회

제1절 의회의 구성

1. 시대적 배경과 의미

이 시기는 건국초기 국가체제가 안정되지 못하여 이상과 규범적 입장에서 형성된 지방자치제도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던 시기이다. 건국 당시로서는 완벽한 민주주의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을 갖고 있었겠지만 정치·행정적 현실은 이러한 이상과는 차이가 있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민주적 질서에 대한 함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결과는 당연한 것이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도 민주적 질서를 구현한 지방자치제가 도입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던 시기로 제1·2공화국이 이에 해당된다.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이후 국가적 체제가 갖춰지지 않고 미군정 3년 동안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와 정치 행정체도가 전파되었다. 지방자치제도는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헌법이 1948년 7월 17일 제정·공포되면서 기반이 마련되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법률 제32호)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현대적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제도의 법적 근거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제1기 지방의회는 형식적 지방자치시기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5개월만에 제1차 개정이 이루어졌고 치안이나 주민의식의 미성숙 등을 이유로 지방선거를 미루다가 한국전쟁 중인 1952년 4월 25일 시·읍·면의회를 시작으로 5월 10일 도의원 선거를 치루었다. 이 또한 지방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가 이뤄졌다.



2. 선거현황

제정 지방자치법에서 도의원 정수는 ‘인구 100만 미만인 때에는 25명을 정원으로 하고, 100만 이상 200만 미만인 때에는 100만을 초과하는 인구 매 5만에 대하여 1인을 증가하고, 200만 이상일 때에는 이를 초과하는 인구 매 8만에 대하여 1인씩 증가한다’고 규정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초대 충청남도의회 도의원 정수는 당시 충청남도 인구가 2,195,756명이었으므로 기본 25명, 100만 이상 200만 미만 5만당 1명으로 20명, 200만 이상 8만당 1명으로 1명이 되어 46명이 되었다.

1952년 5월 10일 우여곡절 끝에 실시한 초대 시·도의회의원 선거는 1개 시, 14개 군 투표구에서 총유권자 916,288명 중 719,784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78.5%의 투표율을 보였다.

128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경쟁률 2.8대1의 경쟁률을 뚫고 46명의 초대 도의원이 선출되었다.

〈표〉 초대 충청남도의회 선거현황

인구수(명)	선거인수(명)	유효투표수(명)			기권자수(명)	투표율(%)	유효 투표율(%)
		유효	무효	계			
2,195,756	916,288	703,787	15,997	719,784	196,504	78.5	97.8%

〈표〉 초대 충청남도의회 선거현황(경쟁률 및 투표율)

의원정수	입후보자수	평균경쟁률	투표율
46	128	2.8:1	78.5

〈표〉지역구별 도의원 당선자 명단

시군별	의원정수	의원명
계	46	
대전시	3	이정우, 최석환, 송석엽(이진락)
대덕군	2	송예현, 강인환
연기군	2	최병익, 강태진
공주군	4	김영옥, 성두기, 김달수(윤선병), 엄대섭(강계주)
논산군	4	임승복, 김천수, 홍 민, 박창래
부여군	3	김건배, 김재련, 이호철
서천군	3	우희창, 김석규, 라희집(조남명)
보령군	3	복연봉, 박종연, 이상락
청양군	2	유충식, 지성벽
홍성군	3	김지현, 박태부, 김달영
예산군	3	조용호, 윤세희, 이승중
서산군	5	장경순, 이상희, 박봉섭, 오순남, 채상근
당진군	3	차만기, 신현구, 송지원
아산군	3	홍순철(조봉환), 원용태, 이성규
천안군	3	이종태, 홍창식, 유재인(임만재)

※ ()밖의 천안군 유재인의원은 작고, 대전시 송석엽, 공주군 김달수, 엄대섭의원, 서천군 라희집 의원, 아산군 홍순철의원 등 5인은 1954년 5월 제3대 민의원 출마를 위해 사퇴함. 결원된 6인의 도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1954년 9월 30일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대전시 이진락의원 등 ()안의 의원 선출

〈표〉초대 충청남도의회 정당·단체별 당선 현황

구분	합계	자유당	민국당	국민회	한청	기타	무소속
당선자수	46	23	1	2	9	1	10
비율(%)	100	50	2.2	4.3	19.6	2.2	21.7

정당별 당선자를 보면 당시 집권당인 자유당이 23석을 차지하여 50%에 달했다. 당시 야당이던 민국당은 1석에 그쳤다. 사실상 이승만 정권을 지지하는 국민회, 한청 등이 다수 당선자를 배출함으로써 여권이 강한 도의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내각책임제 개헌안 반대결의(52년 5월 24일), 이승만 박사 차기 대통령 재출마 권고문 전달에 41명의



만장일치로 채택(52년 7월 22일)하는 등 친 정부적 성향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당선자를 연령별로 보면, 25세~30세의 당선자가 9명이었으며, 36세~45세가 24명, 51세 이상이 4명이었다. 이는 전국 당선자를 연령별로 볼 때 비교적 젊은 당선자가 많은 편이었는데, 사회단체인 한청에서 당선자를 9명 배출한 점 등이 이러한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표〉 연령별 당선자 현황

구분	의원 정수	연령별 당선자 수							
		25~30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세이상
전국	306	23	45	76	58	43	37	20	4
충남	46	9	5	11	13	4	3	1	0

당선자 현황을 직업별로 보면, 농업이 22명, 공업 8명, 자유업 2명, 기타 13명이었다. 전국 상황 또한 충청남도의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는 당시 선거가 충남을 비롯하여,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농어촌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에서 치러졌기 때문이다. 초대 충청남도의회 의장을 지낸 김달영 의원의 직업은 의사였다. 당시 의사는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표〉 직업별 당선자 일람

구분	의원 정수	직업별 당선자 수						
		농업	상업	공업	어업	자유업	기타	무직
전국	306	156	14	48	10	13	56	9
충남	46	22	0	8	0	2	13	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절 의회의 운영

초대 충청남도의회는 1952년 5월 20일(화) 오전 10시 역사적인 제1회 본회의를 개최하였다.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김달영(金達永·홍성군)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에서 초대 충청남도의회 의장에 김달영, 부의장에 라희집(羅熙集) 의원이 당선되었다.

7월 22일 개최된 제2회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를 비롯하여, 농림위원회, 문교위원회, 사회보건위원회, 건설위원회, 상공수산업위원회, 징계자격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것으로 초대 충청남도의회 조직은 의장 1인, 부의장 1인, 7개의 상임위원회로 원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위원회는 본회의 의사결정 전의 예비적 심사기구로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의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지방의회 운영에서 의안심사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도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위원회는 제정 지방자치법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의회는 제2회 본회의 제1차 회의(1952년 7월 22일(화) 개최)회의에서 내무위원회 등 7개의 충청남도의회 분과위원회 구성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각 분과위원회 구성은 아래와 같다.

〈표〉 초대 원구성 현황

(임기 4년 3월 : 1952년 5월 ~ 1956년 8월)

□ 의 장 : 김달영(홍성군) □ 부의장 : 라희집(서천군)/이정우(대전시)

위원회명	위원장	의원
내무위원회	홍순철	송예현, 이호철, 강태진, 이상락, 이정우, 김석규, 성두기, 이성규, 이승중
농림위원회	유충식	김지현, 신현구, 김건배, 채상근, 홍창식, 복연봉, 윤세희
문교위원회	이종태	송지원, 이상희, 우희창, 박창래, 박종연, 엄대섭,
사회보건위원회	조용호	김달영, 홍 민, 차만기, 강인환, 송석렴, 오순남
건설위원회	원용태	김영옥, 임승복, 장경순, 박태부, 라희집
상공수산업위원회	최석환	지성벽, 김재련, 박봉섭, 김천수, 최병익, 김달수,
징계자격위원회	김영옥	김재련, 오순남, 조용호, 이종태, 최병익, 송지원, 복연봉, 최석환, 홍 민, 원용태, 김지현

* 라희집 부의장 민의원 출마를 목적으로 사퇴하여 부의장 보선



제2장 제2대 충청남도의회

제1절 의회의 구성

1. 시대적 배경과 의미

제2대 지방선거는 1956년 8월에 있었는데 선거가 있기 6개월 전 1956년 2월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 임명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시·읍·면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지방의원의 임기를 3년으로 축소하고 지방의원 선거구를 중선거구에서 분할하여 1인 1구의 소선거구제로 변경한 것 등이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원 정수가 46명에서 45명으로 1명 감소하게 되었다.

지방선거 실시를 3개월 앞 둔 시점에서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예상외로 고전한 이승만 정부는 지방선거의 결과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였다. 이렇게 지방선거에 자신을 잃은 이승만 정부는 선거가 실시되는 8월까지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지방의원과 시·읍·면장은 8월 선거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투표율에 있어서는 기초의원 선거, 기초단체장 선거, 광역의원 선거가 각각 79.5%, 86.6%, 86.0%로 제1대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높은 투표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선거결과에 있어서도 제1대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여권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도시지역에서는 오히려 야당이 선전을 하는 여촌야도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서울특별시의원 및 도의원 선거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다.

2. 선거현황

제2대 충청남도의회 도의원 선거는 1956년 8월 13일 충남도내 1개 시, 14개 군의 45개 선거구에서 실시되었다. 45명의 도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에 총 123명이 입후자로 등록하여 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총

유권자 720,673명 중 626,575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86.9%의 투표율을 보였다. 초대 도의원 선거보다 투표율이 10%가까이 상승하였으나 투표 참가자는 줄었다. 이는 3개월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8월까지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지방의원 선거 제외와 단독 입후보 등으로 인해 10명의 의원이 무투표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즉, 의원 정수 45명 중 30명만 선거로 당선되었으므로 실제 도의원 경쟁률은 4.1대 1로 초대 충청도의원 경쟁률 2.8대 1에 비해 더 치열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쟁률을 뚫고 45명의 제2대 충청남도의회 도의원이 선출되었다.

〈표〉 제2대 충청남도의회 선거현황

인구수(명)	선거인수(명)	유효투표수(명)			기권자수(명)	투표율(%)	무투표 선거구수
		유효	무효	계			
1,731,384	720,673	613,770	12,805	626,575	94,098	86.9	10

〈표〉 제2대 충청남도의회 선거현황(경쟁률 및 투표율)

의원정수	입후보자수	평균경쟁률	투표율
45	123	2.7:1	86.9

의원정수 1명 감소, 입후보자 123명 중 중도 사퇴자가 9명 나와 실제 입후보자는 114명이었다. 당선자의 정당 및 단체별 당선현황은 아래와 같다. 초대 도의원 50%를 차지했던 자유당은 제2대 충청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결과 37석을 차지하여 82.2%에 달했다.

〈표〉 제2대 충청남도의회 시군별 의원정수 및 의원명단

시군별	의원정수	의원명
계	45	
대전시	3	박춘경, 변종구, 송병희
대덕군	2	강인환, 박창배
연기군	2	최병익, 임봉수



시군별	의원정수	의원명
공주군	4	김영옥, 이원규, 박 찬, 홍용팔
논산군	4	박창래, 정관호, 강인수, 박병선
부여군	3	태관동, 송두섭, 조준구
서천군	3	나도영, 조남명, 한억수
보령군	2	이영우, 황명현
청양군	2	유충식, 임동선
홍성군	3	김만준, 강구현, 김영한
예산군	3	이승중, 이승구, 최익모
서산군	4	이운재, 손창수, 유제풍, 이상희
당진군	4	최병기, 이상년, 유은상, 송지원
아산군	3	방주현, 조봉환, 김덕성
천안군	3	안장훈, 임만재, 오 춘

제2대 충청남도의회 도의원 선거결과 서산군의 이상희 의원을 비롯한 10명을 제외하고 35석 모두 새로운 얼굴로 바뀌었다.

〈표〉 정당별 당선자수

구분	합계	자유당	민주당	국민회	농민회	무소속
당선자수	45	37	6	0	0	2
비율(%)	100	82.2	13.3	0	0	4.5

정당별 당선자를 보면 당시 집권당인 자유당이 37석을 차지하여 82.2%에 달했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6석에 그쳤다. 초대에 비해 제2대 충청남도의회 의원 당선자가 자유당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국민회, 한청 등이 자유당에 흡수 되었고, 무소속 당선자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었다. 따라서 전대와 마찬가지로 여권성향이 강한 도의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당선자를 연령별로 보면 초대 충청남도의회에 비해 평균 연령이 올라갔다. 25세~30세의 비교적 젊은 당선자가 9명이었으나 제2대 들어서는

1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40대 이하가 14명, 40대 26명, 50대 이상 5명이었다. 이는 사회단체인 한청 등에서 당선자가 배출되지 않았으며, 45명 정수 중 10명을 제외하고 35명의 도의원이 새롭게 선출된 것으로 보아 새로운 도정에 대한 도민의 열망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표〉 연령별 당선자 현황

구분	의원 정수	연령별 당선자 수							
		25~30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세이상
전국	437	14	55	96	121	77	38	28	8
충남	45	1	5	8	17	9	4	0	1

당선자현황을 직업별로 보면, 농업이 30명으로 여전히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공업 6명, 상업 4명, 무직 2명, 교통업·의사·교육자가 각 1명이었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서울·경기가 포함되었음에도 농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직업별 당선자 일람

구분	의원 정수	직업별 당선자 수							
		농업	상업	공업	교통업	의사	교육자	무직	기타
전국	437	214	75	50	7	5	3	35	48
충남	45	30	4	6	1	1	1	2	-

제2절 의회의 운영

1956년 8월 13일 선거에서 당선한 45명의 충청남도의회 의원의 임기는 1956년 8월~1960년 12월까지(4년 4개월)이었다. 지방의원의 임기는 제정 당시 4년으로 하고, 임기는 총선일로부터 기산하되 임기만료 전에 총선거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부터 기산하



도록 하였다. 그러던 것이 1956년 제2차 개정에 의해 3년으로 단축되었다가 1958년 12월 4차 개정에 의해 다시 4년으로 환원되었다. 임기를 단축한 2차 개정의 취지는 지역주민의 자치권을 보다 충실히 한다는 민주적 요청과 행정의 부패와 침체를 방지하고 청신미를 준다는 실제적 요청에 의해 단행되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영속적인 시책을 수행하게 하고 또한 빈번한 선거에서 오는 폐단을 줄이고자 임기를 다시 4년으로 연장하였다.

의장과 부의장은 대외적으로 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해 의사정리권을 갖는다. 아울러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는 권한을 지니며 회의의 사무를 감독한다. 여기서 대표라함은 조직적·의전적인 의미에서 ‘대표’이지 지방의회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의장과 부의장은 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장·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어있다. 처음에는 의원의 임기와 같이 4년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1958년 4차 개정부터 2년으로 임기를 정함에 따라 임기가 4년 4개월인 제2대 충청남도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3기의 의장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표〉 제2대 충청남도의회 의장단

기수	직책	성명	지역구	임기
제1기	의장	이승중	예산군	1956년 8월~1957년 8월(1년)
	부의장	이상희	서산군	
제2기	의장	최병익	연기군	1957년 8월~1959년 12월(2년4월)
	부의장	이상희	서산군	
제3기	의장	유충식	청양군	1959년 12월~1960년 4월(4월)
	부의장	이상희	서산군	
제4기	의장	유충식	청양군	1960년 4.19 직후~1960년 12월
	부의장	이상희	서산군	
		강구현	홍성군	

제1기 의장과 부의장은 1956년 9월3일 오전 10시 30분 도의사당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이승중(자유당)의원이 의장에, 이상희(자유당)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다. 제2기 의장과 부의장 선출은 1957년 8월 29일 실시되었다. 의장단 임기가 2년임에도 1년만에 단행된 이례적 투표였으며, 특히 당시 야당의원들이 불참하는 등 파행 속에 치러졌다. 그 결과 연기군 출신 최병익 의원이 의장에, 서산군 출신 이상희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다. 제3기 의장단은 1959년 12월에 선출하였는데 의장에 유충식(청양군)의원이 당선되고, 부의장에 이상희(서산군)의원이 당선되었다.

1960년 4.19혁명 이후 충청남도의회도 혼란을 겪게 되었다. 1960년 5월 18일 충청남도의회 임시회의 석상에서 충청남도의회 의장인 유충식 의원과 부의장 이상희 의원이 4.19 정신에 따르는 뜻에서 정부의회에 대한 자진사표를 제출하였다. 그렇지만 민주당 소속의 방주현(아산군)의원과 정관호(논산군)의원이 잔여 임기가 2개월 밖에 남지 않았음과 의회의 혼란을 이유로 사표 반력을 상정하였다. 그러나 임시의장에 임봉수(연기군)의원을 선출한 것을 가결하였다. 이후 충청남도의회 제50회 본회의(1960년 6월 30일)에서 의장 및 부의장 사표를 수리하고 재선거를 실시하였는데 의장에 유충식의원이 당선되었고, 부의장에 이상희, 강구현 의원이 선출되었다.



제3장 제3대 충청남도의회

제1절 의회의 구성

1. 시대적 배경과 의미

4.19혁명을 통해 이승만정권이 붕괴된 뒤, 과도정부에 의해 개정된 제2공화국헌법에서는 중앙정부의 내각책임제와 함께 시·읍·면장의 직선제를 헌법을 통해 천명하였다. 제5차 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 임기4년의 특별시장·도지사, 시·읍·면장은 주민이 직선한다.
- ▶ 임기2년의 동·리장은 주민이 직선한다.
- ▶ 서울특별시장의 선거는 기명투표한다.
- ▶ 선거권은 만20세로 한다.
- ▶ 피선거권은 시·읍·면장은 만25세, 특별시장·도지사는 만30세로 한다.
- ▶ 군수(당연직 의장)와 군내 읍·면의회 의장으로 구성되는 군참사회의는 매월 첫째 월요일에 열려 군내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이러한 개정의 가장 핵심은 직선제에 있었다. 이승만 정부에 의해 임명제로 바뀌었던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 방식으로 개정하였다. 민주당정권 내에서도 특별시장과 도지사의 임명제를 놓고 갈등이 있기는 했지만 결국 직선제쪽으로 가닥을 잡아 1960년 10월 22일에 가결함으로써 건국 이래 처음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주민직접선거에 의해 구성되는 체제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1960년 12월 12일에 특별시와 도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결과 집권당인 민주당이 우세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무소속이 대거 당선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민주당이 폭넓은 지지와 각 지역에 뿌리 내리지 못한 점도 있겠지만, 지역기반이 공고한 구 자유당 출신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것도 한 원인이 되었다. 충청남도의회 당선자 48명 중 무소속이 21명이나 되었다.

2. 선거현황

제3대 충청남도의회 의원정수는 도내 인구증가로 48명으로 2대에 비해 3명 증가하였다. 4.19혁명으로 자유당이 붕괴되고 민주당에 의해 제2공화국이 수립되어 실시된 제3대 도의원 선거는 총유권자 1,137,184명 중 781,935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68.8%의 투표율을 보였다.

188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3.9대 1의 경쟁률을 뚫고 48명의 제3대 충청남도의회원이 선출되었다. 이와 더불어 12월 29일에는 최초의 민선 도지사 선거에서 이기세 도지사가 당선되었다. 그러나 3대 도의회와 민선도지사는 임기를 6개월도 못 채우고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부의 지방자치제 전면 중단으로 아쉽게 끝나게 되었다.

〈표〉 제3대 충청남도의회 선거현황

인구수(명)	선거인수(명)	유효투표수(명)			기권자수(명)	투표율(%)	유효투표율(%)
		유효	무효	계			
2,22,725	1,137,184	736,756	45,179	781,935	355,249	68.8	94.2%

〈표〉 제3대 충청남도의회 선거현황(경쟁율 및 투표율)

의원정수	입후보자수	평균경쟁율	투표율
48	188	3.9:1	68.8



〈표〉 제3대 충청남도의회 시군별 의원정수 및 의원명단

시군별	의원정수	의원명
계	48	
대전시	4	이문호, 유영식, 김윤식, 서완석
대덕군	2	송태섭, 박환목
연기군	2	진웅식, 김태룡
공주군	4	임헌세, 이기영, 박 찬, 김봉영
논산군	4	유충열, 윤기병, 김용필, 박봉호
부여군	4	김종오, 송두섭, 조삼구, 조준구
서천군	2	신문섭, 최운집
보령군	2	이영우, 김현박
청양군	2	이철우, 한석원
홍성군	2	장기익, 김응주
예산군	4	박창식, 이회영, 이종한, 윤남의
서산군	4	조제현, 명화섭, 이종신, 가경노
당진군	4	강영식, 홍현선, 박찬성, 이정식
아산군	4	황명수, 방주현, 지태영, 임혹선
천안군	4	허만석, 황규영, 이의백, 김영석

〈표〉 제3대 충청남도의회 정당·단체별 당선 현황

구분	합계	민주당	신민당	사대당	재향	무소속
당선자수	48	18	8	0	1	21
비율(%)	100	37.5	16.7	0	2.0	43.8

정당별 당선자를 보면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이 18석을 차지하여 37.5%로 정당별 의석수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무소속이 오히려 21명으로 43.8%에 이르고 있었다. 이것은 4.19 혁명으로 기반을 잃은 자유당 출신들이 강력한 지역기반을 바탕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한 것으로 보인다.

당선자를 연령별로 보면 40세 이하의 비교적 젊은 당선자가 5명이었으며, 40대가 13명, 50대가 24명, 60세 이상이 6명이었다. 4.19혁명의 분위기 속에 치러진 선거로 정치 변화에 대한 열망이 높아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당선의원 48명 중 재선에 성공한 의원은 민주당 소속 방주현의원 등 5명에 불과한 것 또한 그러한 사회변화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표〉 연령별 당선자 현황

구분	당선인수	성별		연령별						
		남	여	30~35	35~40	40~45	45~50	50~55	55~60	60세이상
전국	609	595	14	2	44	117	139	96	126	85
충남	48	47	1	0	5	6	7	11	13	6

당선자현황을 직업별로 보면, 농·축산업이 8명으로 과거와 달리 그 비중이 낮아진데 비해 정치인과 지방의회 의원을 지낸 이들 18명이 당선된 것이 주목된다. 의회가 자리잡아가면서 기존에 정계에 활동하던 이들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도의원에 당선된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그 외에 상업, 회사원이 각 4명이고 다양한 직업군이 분포하고 있다.

〈표〉 직업별 당선자 현황

구분	의원 정수	직업별 당선자 수									
		농축 산업	상업	정치인	지방 의회 의원	건설업	금융업	약사· 의사	회사원	교육자	기타
충남	48	8	4	9	9	1	1	1	4	3	8

제2절 의회의 운영

제3대 충청남도의회는 의원 정수 48명이 임기 1960년 12월~ 1961년 5월 16일(6개월)의 짧은 의정활동을 위해 원구성을 하였다. 1960년 12월 21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정부의장 선출과 의사일정 등을 결정하였다.

의장선거에는 임헌세의원과 방주현의원이 출마하여 투표한 결과 임헌세의원이 26표, 방주현의원이 21표를 득표하였다. 이어진 부의장 선거는 박찬의원과 서광석의원이 출마하여 박찬 26표, 서완석 19표, 무효 2표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제3대 도의회 의장에 임세헌(무소속·공주군)의원이 선출되었고, 부의장에 박찬(신민당·공주군)의원이 선출되었다. 그러나 민주당을 배제한 원구성은 끝내 불신임안이 제출되게 하였다. 제3대 충청남도의회 마지막 회의가 된 제53회 본회의 최종일인 1961년 1월 31일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정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신민당과 무소속의원들은 투표 직전 30분간 휴회 요청하여 퇴장한 후 참석하지 않아 성원을 이루지 못해 불신임안은 결국 폐기되고 말았다.

6개월의 기간에 불과하였으나 교육대학설치 문제, 지방자치제도 강화를 위한 건의, 온양온천과 유성을 관광사업지구로 조성하기 위한 건의 등 의회의 역할을 다 하였고, 5월 16일 군사혁명위원회에 의해 국회 및 지방의회 해산 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충청남도의회는 문을 닫게 되었다. 이후 국가기구의 모든 기능은 군사혁명위원회에서 집행하게 되었다.

MEMO

의 정 정 보

- ❖ 발 행 일 : 2014년 2월 28일
-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
- ❖ 인 쇄 처 : 동방상사 TEL.041-338-9520